

劉浩

定款趣旨事業計劃書

社團法人韓國原爆被害者援護協會

서울특별시龍山區漢江路二街一二七

私書函 房八七〇号

電話 二四三二

國際電信號 ABCRA

社団法人 韓國原爆被害者援護協會 定款

第一章 總則

第一條 (名稱) 本會는 社団法人 韓國原爆被害者援護協會 (以下本會라 한다) 라 稱한다

第二條 (目的) 本會는 第二次世界大戰 (太平洋戰爭) 當時 日本國 廣島市 및 長崎市 에서 聯合國側 (美軍) 의 原子彈 爆撃으로 因하여 陽性 또는 陰性的인 身體上의 被害를 입고 生存한 大韓民國 國民에 對하여 各種 實態 調査, 原爆病의 治療可能性研究, 被爆患者에 對한 啓蒙 및 治療의 輕便 其他 援護를 行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三條 (事務所) 本會의 中央本部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但 必要한 地域에 支部를 둘수 있다

第二章 事業

第四條 (事業) 本會는 第二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의 下列의 事業을 營爲한다

一、原爆被害者 與態調査에 關한 事項

1. 國內被害者의 被害狀況과 治療狀況 및 生計與態調査

2. 原爆被害者에 對한 援護事業의 基礎調査와 檢査

3. 海外僑胞被害者의 與態調査 및 外國被害狀況의 相互交換

4. 外國에 있어서의 原爆被害者 援護團體의 活動狀況 調査

二、被爆患者에 對한 外國의 醫療施設調査

1. 外國原爆病院에 對한 施設 및 活動狀況

2. 原爆病院을 國內에 施設할 否와 治療可能性 與否의 檢査

三、原爆被害者에 對한 支援事業

1. 原爆被害者에 對한 指導啓蒙

2. 被爆患者의 治療斡旋

四、其他 原爆被害者 援護를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

七 附帶事業

第五條 (年度事業計劃) 本會는 每年度 開始 月前에 翌年度 事業計劃을 樹立하여 定期總會의 議決을 거쳐 主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三章 資產

第六條 (基本財産의 造成) ① 本會는 恒久的인 事業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基本財産의 造成을 目標로 會員의 會費와 事業收入金 其他의 雜收入金으로 이를 造成한다

第七條 (基本財産의 處分) 基本財産은 法人解散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를 處分하지 不得하다

第八條 (基本財産의 目錄) 本會 中央本部事務所에는 正確한 基本財産目錄을 備置하고 變動이 있을 때는 遲滯없이 整理하여야 한다

第四章 會員

第九條 (會員의 種類) ① 本會의 會員은 正會員 特別會

員 名譽會員의 三種으로 한다

② 正會員은 原爆被害者 本人에 局限하며 特別會員
 은 一般有志로서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고 應分의
 贊助를 行한者로서 特別會員이 되기를 希望하는 者로
 하며 名譽會員은 本會에 多大한 功勞가 있는 者로
 시 特別會員으로 推戴한 者로 한다

第十條 (會員加入 절차) ① 正會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會員加入申請書에 居住證明書類 및 原爆被害者로 認
 定할 수 있는 證憑書類를 添付하여 本會에 提出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② 特別會員 및 名譽會員은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會長이 推戴한다

第十一條 (會員의 權利와 義務) ① 正會員은 本會로 부

터 各種의 援護를 受惠할 權利 및 總會의 代議員이
 될 權利를 保有하며 本會의 會費를 納付할 義務 및
 本會款 其他 諸規程을 遵守할 義務가 있다

② 特別會員 및 名譽會員은 理事會 및 總會에
出席하여 協會發展에 關한 發言할 權利가 있다

第十二條 (賞罰) ① 正會員으로서 그 義務를 違背하였
거나 또는 本會의 名譽를 顯著하게 損喪시켰을
때에는 理事會의 決議로서 除名處分할 수 있다

② 本會會員으로서 本會에 顯著한 功勞가 있는
者에 對하여는 이를 表彰할 수 있다

第十三條 (會員脫退) 本會會員으로서 不得已한 事情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本會를 脫退할 수 있다

第十四條 (會員名簿) 本會中央本部에는 各種類別 會員名
簿을 備置하고 變動이 있을 때에는 遲滯없이 整
理하여야 한다

第五章 在員

第十五條 (在員) ① 本會의 在員은 下記の如하리다

一 會長 一人

二 副會長 一人(常勤)

三 理事 九人 (三人以内을 常勤으로 할수 있다)

四 監事 三人以内 (一人을 常勤으로 할수 있다)

② 前項 任員以外에 若干名의 顧問을 둘수 있다

③ 顧問은 内外人士에서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會長이 推戴한다

第十六條 (選任) 任員은 會員中에서 總會의 議決을 거쳐 選任하며 保社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十七條 (職能) ①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辦하며 各級會議의 議長이 된다

②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이 有故時에는 其 職務를 代理한다

③ 理事는 擔當業務를 管掌하고 理事會의 構成員이 된다

④ 監事는 本會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第十八條 (任期) 會長, 副會長, 理事의 任期는 各各 四年
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二年으로 한다
但 重任할 수 있으며 補闕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十九條 (任員의 報酬) ① 任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但 常勤員은 任員은 有給할 수 있으며 非常勤任員
에 對하여도 豫算의 範圍內에서 車馬費 其他 虞費
를 支給할 수 있다
② 任員의 報酬 및 其他 諸給與의 額數等은 每年
豫算에 明記하여 總會의 承認을 얻어서 이를 虞施
한다

第六章 會議

第二十條 (會叢의 種類) 本會의 會叢는 總會의 理事會의
二種으로 하며 會長이 召集한다

第二十一條 (總會) ① 總會는 定期總會의 臨時總會의 二
種으로 한다

② 定期總會는 每年度 決算期 終了後 一箇月 以內
 에 이를 召集하고 臨時總會는 會員 千分之二以上의
 請求가 있거나 理事會에서 決議가 될때에 이를 召集한다

第二十二條 (總會 및 代議員會의 構成) ① 總會는 會員全

體 會員 過半數의 出席으로서 成立한다. 代議員總
 會는 總會召集이 可能할 場合에 이를 召集하고 代
 議員 過半數의 出席으로서 成立된다

② 前項의 二種中 理事會의 決議에 따라 扶一한다

③ 代議員의 定數와 選出方法等은 別途 定하는 規
 程에 依한다.

第二十三條 (議決方法) 議案은 出席人員 過半數의 贊成으

로서 議決되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議長이 決裁權을
 가진다. 但 定款의 變更은 出席人員 三分之二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第二十四條 (總會 및 代議員會 附設事項) 總會 및 代議員會

- 이 附設하여야 할 事項은 下記의 如하리 如하리
- 一 定款의 制定 및 變更에 關한 事項 (總會에 限함)
 - 二 任員의 選出
 - 三 豫算 및 決算의 承認
 - 四 年度事業計劃의 承認
 - 五 會員의 會費 決定
 - 六 基本財産에 關한 事項
 - 七 解散에 關한 事項
 - 八 其他 會長 또는 理事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하
 議 其 附設案件

第二十五條 (理事會) ①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로 認定하
 는 時 또는 理事 過半數의 要請이 있을 時에 이를
 召集한다

② 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및 理事로서 構成하며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人員 過半數의 贊成으로서 議
 決된다. 但 贊否同數인 때에는 會長이 決定한다

②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

第二十六條 (理事會附設事項) 理事會에 附設하여야 할 事項
은 下記의 如하와 같다

- 一. 會員加入에 關한 事項
- 二. 會員賞罰에 關한 事項
- 三. 總會召集 規則에 關한 事項
- 四. 豫算 및 決算案 審査에 關한 事項
- 五. 年度事業計劃樹立에 關한 事項
- 六. 事業實行에 關한 事項
- 七.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
- 八. 諸規程의 概定 又は 改廢에 關한 事項
- 九. 其他 本會 運營上 重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

第二十七條 (會設錄) 各級 會設가 끝나면 반드시 會設
錄을 作成하여 設長과 出席理事 三人以上의 署名을
받아야 한다

第七章 事務局

- 第二十八條 (事務局) ① 本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本會中央本部內에 事務局을 둘수 있다
- ② 事務局의 職制 및 事務分掌等에 關하여는 別途
定하는 規程에 依한다

第八章 財政 및 會計

- 第二十九條 (歲入과 歲出) 本會의 歲入은 會費 事業收入
金 其他 雜收入等을 財源으로 하고 歲出은 基本財
産助成費와 運營諸費로 區分한다

- 第三十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政府會計年度에
準한다

- 第三十一條 (豫算과 決算) ① 本會는 每會計年度 開始前
에 翌年度 豫算案을 編成하여 定期總會의 議決을
經치 主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 ② 本會는 每會計年度 終了後 一個月 以內에 前年
度 決算書를 作成, 總會의 承認을 얻어 主務部長官

12
L 12 11 15 12 12 12
에 報告되어야 한다

③ 決算剩餘金은 基本財産에 編入하는 것을 除外하
고는 翌年度 歲入에 移越한다

第三十二條 (監査) 監査는 每會計年度 終了後 二週日 以
前に 決算監査를 實施하고 그 狀況을 書面으로서
理事會와 總會에 通告 또는 報告하여야 한다

第九章 解散

第三十三條 (解散事由) 本會는 아래의 事由에 依하여
解散한다

- 一 正會員이 한사람도 없게 될 때
- 二 破産宣告를 받았거나 設立許可를 取消되었을 때
- 三 目的의 達成이 確定的으로 不可能하게 될 때
- 四 總會員 三分之二以上の 出席과 出席人員 三分之二
以上の 贊成으로서 解散이 決議되었을 때

第三十四條 (解散時의 財産) 本會 解散時의 殘餘財産은
主務部長官의 認可를 얻어 處理한다

附 則

第三十五條 (經過規程) 本會設立直後 役員은 設立發起人
會에서 이를 送出한다. 但, 初代 役員의 任期는
五年 四年으로 한다

第三十六條 (効力発注) 本定款은 主務部長官의 認可를
얻어 登記한 날로부터 効力이 發生된다

第三十七條 (公告) 本會의 公告는 特別市內에서 發行
하는 新聞에 掲載한다

趣

旨

又

傷 腎臟障害 肝臟障害 造血障害 循環障害 白血病 白肉

障 胃腸 肺腸 性的障害 遺傳障害等々 諸症狀으로 稼働

能力이 減어 生業에 從事할수 없는것은 勿論이요 工生

活의 慘狀이란 形言할수 없고 生에對한 意欲이나 希望

조차도 갖지 못하였고 取席橫死의대만 기다리는 形便이다

1966年 8月 6日附 中央日報 第四面에 報道된 바에

核실험 「原爆犠牲者는 우리 주변에도 있다 避難과 復

개: 広島 長崎에서 귀국한 難民들은 八五名중 五

十名 瘡이 남아있는것으로 보이지만 그들中 瘡면이 이

면 原子病으로 止聲하고 있는지는 알수없다 四四年

原子力院 放射線研究所는 保社部를 통해 二百三十名의 被

爆患者를 調査했고 이어五五년에 赤十字社는 四百五十名

을 集計했다 火傷 外傷 腎臟장애 肝臟장애 造血장애

循環障害의 被害者 瘡의 時形兇도 二十一名이다 報告

되고있다 二十一年이 흘러 다시 두나라 사이에 來往이

始作됐지만 우리나라의 被爆者에게는 아직 아무런

策도 없다」고 했으며 또 「비림 받은 原爆의 人生」
이 題目下에 平生 바보가 되어 둘째형의 큰 딸이로 거
우 면명하고 있는 어느 患者의 悲惨 实例를 들고 있으
나 이러한 모든 報道上에 現在까지 나타난 計數는 實

際被害者의 數에 比하면 氷山の 一角에 不過하다 東洋
TV에서는 1966年 8月 8日 午後十時半에 韓國原爆被害
者에 對한 座談會를 開催하여 이를 公開放送 했을 때

出席者들은 學界 言論界 係社部 赤十字社 原子力院等の
代表들과 被害者代表 三名이였다 座談內容의 重要骨子는
原爆被害者가 우리 韓國에 어떻게 많이 있는 줄은 몰랐
다 「今時初聞이다」가 大部分이고 被害者側에서 行政當局
者에게 救護對策을 呼訴했으다 「計算이 全然 없이 只今으로

서는 무엇이든 말할수 없다」는 對答이고 赤十字社 側에서는
「우리는 原爆被害患者를 調査한바 그數가 五百八十名에
達하고 있으며 우리調査가 範圍的으로나 時間的으로나
全이라 할수 없고 現在 우리 形便으로서는 具體적인

策을 세울수 없고 다만 施療을 呼訴하는 患者에

限해서만 各己 그地域支社에서 施療을 한다」는 至極의

消極的이고 彌縫的인 現狀下에서 原爆被害者들은 束手

無策으로 다만 기다리는것은 「죽음」 뿐이라는 딱한 事情

에 處해 있는 것이다

現在 國內坊場谷々에서 束手無策으로 呻吟하다가 죽어가

는 數千名의 原爆被害者들도 우리 大韓民國의 아들 딸

남녀와 그들은 日本帝國主義者에게 끌려가서 強迫勞働을

당하다가 原爆을 맞아 平生病身이 됐을뿐 아니라 稼働

力마저 喪고 糊口之策도 없이 죽음만 기다리는 그들을

우리는 「予算이 없다」 施療呼訴者만 「治療해준다」 는 程度

로 對峙의 場이 아닌 悲愴의 場이

原子病으로 생긴 畸形兒들을 마치 天刑兒처럼 取扱하

고 醫學上 研究資料程度로만 對峙해야 되겠읍니까

平生로病身의 몸으로 勞働力도 없이 굶기를 當者가

받듯듯이 하면서 가난한 親戚들에게 依持하는가 하면

그것조차 못 하는 悲慘함 그들은 門前乞食을 하다가 行
旅病死者로 사라져가는 꼴을 우리는 産觀하고 外面에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가 없는 사람들을 도와야겠습니까 原子病을
고칠수 있고 또 汚染을 막을수 있는 醫療機關을 단
편이 우리의 可能한 힘을 다해서 이분들의 苦勞지가
되어주어야겠읍니다 現在 美國과 日本에서는 이 原子病

患者의 治療에 兩國의 裨擻하여 全力을 다하고 있다고
들었읍니다 우리 同胞患者도 이러한 醫療機關을 活用할
수 있는 꼴을 더주어야겠읍니다

우리는 이 病들과 職業없이 話주리며 죽어가는 이분쌍
한 同胞들이 하루 한끼라도 한알의 藥이라도 경험을

통히 使用하는 藥들을 먹어볼수 있도록 生計의 꼴을
더주어야겠읍니다 日帝에 強制로 끌려가서 原子病까지

얻어 平生을 病身으로 굶어야하는 이사람들에게 무슨
罪가 있단말입니까? 단지 日帝에 끌려갔었다는 그罪故

으로 이러한 過重한 刑罰을 받아야 판단할 일인가?

우리는 그 當時 이들을 雇用한 會社로부터 賃金과 補償金其他 이 사람들이 人間으로서 宜當히 享有해야 할 모든 權利를 찾아주어야 겠읍니다 現在 日本에서는 解放

當時 이 사람들을 雇用한 會社들이 이 사람들을 爲하여 賃金補償金等義를 準備해두고 있는 곳도 있고 없고 있음과도 이것을 찾을 수 있는 手續簡便조차 辦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苦境으로 우리는 과사야 겠읍니다

韓國原爆被害者援護協會는 이러한 일을 하기 爲하여 別記외 같은 事業計劃을 檢査하고 이를 實踐하는 데 뜻있는

江湖諸賢의 聲援과 鞭撻을 期待합니다

事業計劃書

1967年7月末現在

1967年4月 向後三年間

年度別 項目別	1967年度	1968年度	1969年度
會員實施調查	(本協會所定様式) 1. 會員登錄 2. 市道別統計	1. 家族調査 2. 身体及財力上の調査	
緊急患者 医療斡旋	1. 金料治療 (原社副協調下) 2. 実費治療 (各市道立病院)	日本原爆病院に入院交渉 及 医療研施設費請本協会直 接医療院 建立附院時 交渉	
會員注冊支援	1. 會員生活狀況調査 2. 職業輔導斡旋 (原社副協調下)	被爆者支援法制定を 促進す るため 社内 実現目標 期に及ば ず	本協会の 再治院の建立 附院と 被爆者支援法 施行を 網羅的に 事業 の 完全を 期すに 及ば ず
在日僑胞被爆者調査	日本玄島大学医学部放射線医学 研究所に 依頼調査		→
被爆者支援法制定	基礎資料集が 完結する まで 國 会に 立法を 請願す 同法会 の 年内 通過を 期す	同年8月6日 原爆記念日 には 同法を 施行する まで 犠牲者 査前に 報告す こと 願ふ	→
關係外國機関人士招請 及 協会役員 海外視察	1. 予算の 内容を 対して A, B, C, D を 招請 2. 協会役員 7名を 日本に 派遣 被爆者支援状況を 視察研究 実施	1. 日本に 役員を 派遣す ため 医療院 療養院 再治院 建立 の 交渉を 要請 2. 美國に 役員を 派遣す ため 被爆 者 側 にも 必要を 施設を 要請	
基本財産造成	1. 財団法人補償中心の 被爆者補 償請求(國會、政府) 2. 被爆者緊急対策基金の 同場 募 金活動基金等の 協調を 要請	1. 被爆者補償中心の 被爆者側 に 建立地 1万坪 買収 2. 医療員住居工場(避妊者) 建立(4月 竣工予定)	國內に 日本、美國等 地の 一般 募金 実 施
被爆者 側 建立	1. 医療院 療養院 再治院 其他 施設を 必要を 築地 10万坪 拂 進出 設計図書 完成等	1. 日本政府に 側 建立費の 附 随 として 費用請求 2. 美國政府に 側 建立に 必 要な 一切 施設を 要請	年内 竣工 竣工 竣工 竣工 竣工 竣工
原子毒物薬料研究所設置	1. 研究所(医師及薬師) 構成 基礎調査	日本玄島原爆病院 其他 外國機 関に 研究員 3名 派遣	被爆者 側 内に 研究所 を 本格的に 活動開始
協會本部設置	基 礎 調 査	釜山、大田、大田、光州、日本、東京、 京、玄島、長崎市	
行 事 計 劃	韓國 反共聯盟 協調下 に 思想 啓蒙 及 救済 講座	8月6日 原爆犠牲者 追善 祭 及 追善 行事	→